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80호 2015. 8. 18(화)

공 고

- 남원시공고 제2015-992호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 남원시공고 제2015-993호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5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공고 제2015-992호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에 따른 규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개축시 기부 채납에 대한 의무규정 완화(안 제10조)

- “사용검사와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를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여성가족과(전화 063-620-6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끝.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8.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된 건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개축시 기부채납에 대한 의무규정 중 기부채납 규정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완화 (안 제10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5. 8.18. ~ 2015. 9. 7.(20일간)

- 결 과: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를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남원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하며 남원시 관서당길 35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2호 중 “한다)이라 함은”을 “한다)이란”으로, “활동으로서”를 “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을 ““청소년문화의 집”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을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으로 한다.

제4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남원시내”를 “남원시”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 사용토록”을 “따라 사용하도록

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또는 일부에 대하여”를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사용할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원래대로 조속히”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를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로, “한계 및 기타”를 “한계, 그 밖에”로,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를 “등을 계약·체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을 “및 운영재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개축하고자 하는”을 “증축·개축하려는”으로,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채납 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단된 때”를 “관단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할 때”를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12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을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 ----- -----</p>
<p>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남원청소년문화의집 : 남원시 관서당길 35(쌍교동)</p> <p>2. 삭제</p> <p>3. 삭제</p>	<p>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남원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하며 남원시 관서당길 35에 둔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p>	<p>제3조(정의) ----- -----뜻은 ----- -----</p> <p>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p>

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
 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
 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
 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
 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
 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과 문화, 예술,
 정보, 취미활동, 동아리모임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
 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5. (생략)
-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
 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협의) ① 단체 또는 개
 인이 특정시설을 전속적으로 이

-----한다)이란 -----

 -----활동
 을 -----

 -----.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

 -----.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

제4조(사업) -----
 -----.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

제5조(시설의 이용) 남원시 ----

 -----.

제6조(이용협의) ① -----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이용 희망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
선순위에 의하여 사용토록 한
다.

- 1. · 2. (생략)
- 3. 기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협의를 받은 자가 이용목
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 3.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
래대로 조속히 변상하여야 한
다.

-이용하려는 -----

-----.

② -----
----- 경우에는 -----
----- 따라 사용하도록 --
-----.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

----- 또는 일
부 -----
-----.

- 1. ----- 그 밖에 -----
----- 불가능한 경우
- 2. 제6조제1항에 따라 -----
----- 사용한 경우
- 3. -----
-----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상책임) -----

-----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
-----.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청소
 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
 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
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
 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
 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
 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
 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
 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

제9조(위탁관리) ①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
설을 위탁관리 -----

③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납원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

② -----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 -----

-----때에는 -----
-----.

③ -----
-----증축·개축하려는 ---

-----받아야 -----

-----.

④ -----
-----따라 -----

-----.

제11조(위탁의 취소) -----

-----경우에는
-----.

1. -----위
반한 경우
2. -----
판단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
-----인정한 경우

제12조(감독) -----
-----공무원에게 -----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

제14조(시행규칙) -----시행
에 -----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5-993호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 있어 다른 시설자의 명칭과 통일(안 제3조 및 안 제7조)

-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나. 팀장, 팀원,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변경함(안 제8조)

- 팀장, 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 만 “58”세를 만 “60”세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여성가족과(전화 063-620-6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8.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있어 다른 시설의 장의 명칭과 통일(안 제3조 및 안 제7조)
 -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 나. 팀장, 팀원,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변경함(안 제8조)
 - 팀장, 팀원 및 행정원 의 정년 만 “58”세를 만 “60”세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9. 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칭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를 “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을 “기준은”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복지센터소장”을 “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8세”를 “60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에 해당될 경우”를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를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각 당연퇴직 한다.”를 “당연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를 “직권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때,”를 “경우에는”으로,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를 “직권면직”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중 “단,”를 “다만,”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하고자 하는”을 “수탁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하고 직무”를 “대표하고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를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를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해”를 “위원은”으로, “실비”를 “여비”로 한다.

제14조 제1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5조 중 “전반에 대하여”를 “전반을”로, “업무에 대하여”를 “업무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삭제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의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선발 자격기준 구분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u>칭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둔다.</u></p>	<p>제2조(명칭과 위치) ----- ----- -----<u>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u> ----- -----.</p>
<p>제3조(구성) ① 복지센터는 <u>소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u></p> <p>② <u>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u></p>	<p>제3조(구성) ① -----<u>센터장</u> ----- ----- ----- ----- -----.</p> <p>② <u>센터장</u> ----- -----.</p>
<p>제4조(시설기준) 복지센터의 <u>시설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별표 1의 상담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제4조(시설기준) ----- <u>기준은</u> ----- ----- -----.</p>
<p>제7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복지센터소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u></p>	<p>제7조(자격과 임용) ----- ----- -----.</p> <p>1. <u>복지센터장</u> ----- ----- -----.</p>

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3. (생략)

제8조(직원 등의 정년) 복지센터
상근 직원 등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장 : 만 60세
- 2. 팀장, 팀원 및 행정원: 만 58세

제10조(직원의 면직) 복지센터 직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연 퇴직되거나 시장이
직권면직 한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당연퇴직 한다.
- 2. 제8조에 따라 직원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
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
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
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

--.

2.·3. (현행과 같음)

제8조(직원 등의 정년) -----

-----.

- 1. 센터장 -----
- 2. -----60세

제10조(직원의 면직) -----
-----호에 해당될 경
우에는 -----
-----.

- 1. -----
-----해당될 경우에
는 당연퇴직
- 2. -----

-----당연퇴
직
- 3. -----

-----직권면직
- 4. -----

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복지센터 운영·시설관리 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경
우에는 -----
직권면직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① ----

다만, -----

경우에는 -----
-.

② -----수탁하
려는 -----

③ -----운영하
려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략)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협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 소집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
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
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 -----대표하
고 업무 -----

-----.

⑤ (현행과 같음)

⑥ -----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13조(협회의의 운영) ①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생략)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협회의 기능) 협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 내 제반 청소년문제 관련 정보교환
- 2.·3. (생략)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②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

-----여비 -----
-----.

제14조(협회의 기능) -----
-----.

- 1. -----모든 -----

- 2.·3.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
-----전반을 -----

-----업무를 -----

-----공무원에게 -----.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남원시 각종 위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준용한다.

②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시행
 에 -----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